

명 장 공 원 민 간 공 원 조 성 사 업
도 시 관 리 계 획 (용 도 지 역) 결 정 (변 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내용)

2019. 01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고질적 민원 해소와 일몰제 발효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 또는 해제 전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잘 조성된 도심공원 확보가 필요함
- 금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간사업자의 공원부지 매입 등을 통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 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미조성된 공원부지를 매입한 후, 매입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의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328-1번지 일원에 공원시설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 본 명장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별표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가. 추진경위

- 1972.12.30. : 공원최초결정(근린공원-768,510㎡)
(건설부 고시 제555호)
- 1994.05.07. : 부산도시계획시설(명장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 승인
(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14호)
- 2011.09.21. : 도시계획시설(명장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50호)
- 2013.01.02. : 명장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530호)
- 2018.01.03. : 제2·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차 제안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7-2641호)
- 2018.01.24.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0호)
- 2018.03.05. : 제2·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차 제안서 제출
- 2018.04.04. : 제2·3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949호)
- 2018.04.11. :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개시 알림
- 2018.04.30. :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제안서 사전협의
- 2018.06.19. : 주민설명회
- 2018. 12.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심의)

나. 향후 추진계획

- 2019. 01.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2019.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1.4 계획개요

가. 계획명

- 명장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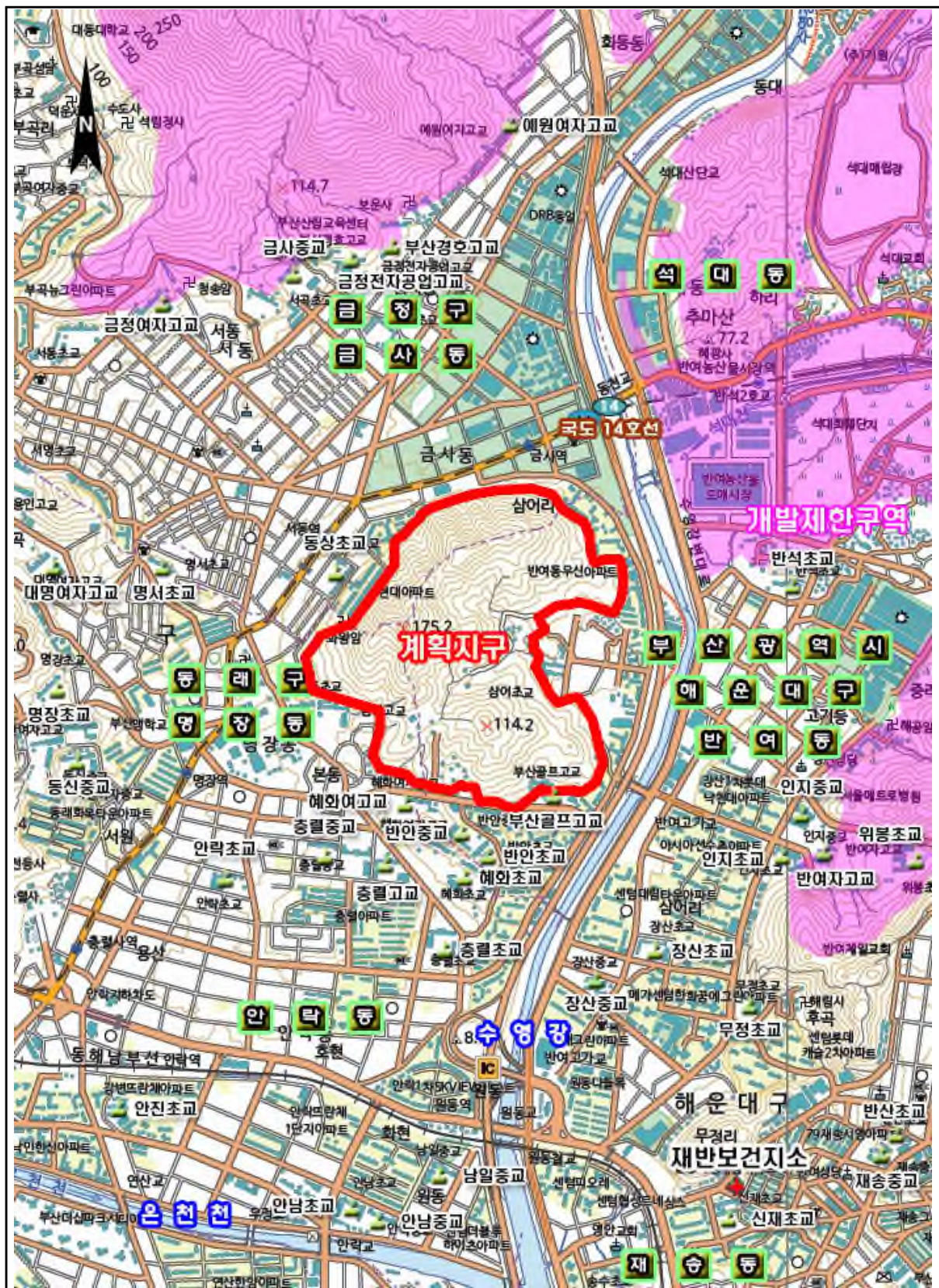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328-1번지 일원
- 계획면적 : 785,030㎡ (공원 704,030㎡, 비공원 81,000㎡)

다.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
- 목표년도 : 2022년

라. 계획시행자

- (주)삼정기업 컨소시엄



<그림 1.4-1> 위치도



〈그림 1.4-2〉 위성사진

1.5 계획의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85,030	-	785,030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72,386	72,386	9.2	-
자연녹지지역	785,030	감)72,386	712,644	90.8	-

※ 비공원시설용지 중 기반시설(도로)용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해운대구 반여동 1167-2번지, 산342-1번지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72,386	300% 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른 명장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용도지역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규모(㎡)		구성비 (%)	비고
시 설 명	구분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변경	785,030.00	137,805.30	9,149.69	10,918.85	100.00	-
도로 및 광장		24,171.70	24,171.70	-	-	3.08	-
조경시설		21,928.30	21,928.30	-	-	2.79	-
휴양시설		5,070.80	5,070.80	-	-	0.65	-
유흥시설		34,257.10	34,257.10	101.69	101.69	4.36	-
운동시설		22,608.10	22,608.10	9,048.00	10,817.16	2.88	-
교양시설		26,220.60	26,220.60	-	-	3.34	-
편익시설		3,545.20	3,545.20	-	-	0.45	-
녹지		566,228.20	-	-	-	72.13	-
비공원시설		81,000.00	-	-	-	10.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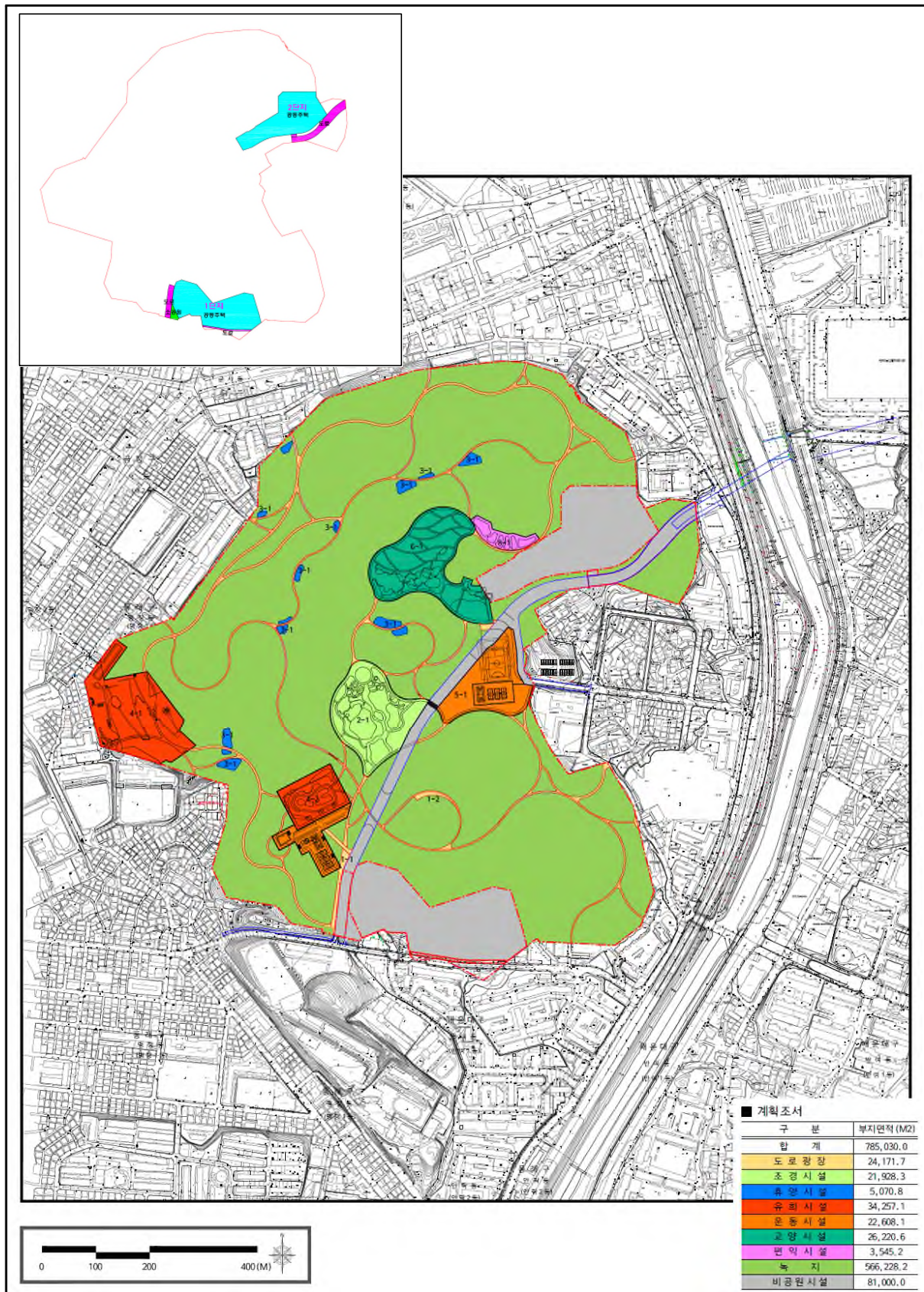
명장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다. 토지이용계획

<표 1.5-1>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85,030.0	100.00	-
비공원시설 소계		81,000	10.32	-
1단지	계	41,155	5.24	-
	공동주택	36,850	4.70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공원	981	0.12	
	도로(Set-back)	910	0.11	
	도로	2,414	0.31	자연녹지지역
2단지	계	39,845	5.08	-
	공동주택	33,645	4.29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	6,200	0.79	자연녹지지역
공원시설 소계		704,030.0	89.68	-
도로 및 광장		24,171.7	3.08	-
조경시설		21,928.3	2.79	-
휴양시설		5,070.8	0.65	
유흥시설		34,257.1	4.36	
운동시설		22,608.1	2.88	
교양시설		26,220.6	3.34	
편익시설		3,545.2	0.45	
녹지		566,228.2	72.13	



<그림 1.5-1> 토지이용계획도

제2장 대안의 설정

2.1 대안의 종류 및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에 따른 대안의 설정은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계획의 특성 및 대안의 선정방법 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음
- 대안선정은 「계획비교」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Action)로 구분하였음

<표 2.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안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 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x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x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x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x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x

2.2 대안의 비교

<표 2.2-1> 계획의 비교

구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No Action)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Action)
장점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도시공원의 기능 제고 - 미집행시설 해소를 통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성 확보
단점	2020년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자동 실효에 따라 도시공원 해제 및 무분별한 개발 발생 - 시선 노후화 및 통일성 부족	- 공사시 토공발생으로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 등 환경영향 발생 - 공동주택계획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환경영향 발생
선정안		◎

제3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평가항목 설정

가.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환경영향요소는 본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 기준의 부합성, 자원·에너지 순환을 효율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인위적인 행위 및 현상을 말하며, 공사시 및 운영시의 전 단계에 걸쳐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그림 4.1-1>에서와 같이 계획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표 4.1-1>과 같이 추출하였음



<그림 4.1-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3.1-1> 환경영향요소 추출

공 사 시	운 영 시
• 기존지형 변화 • 식생훼손 • 토사운반 • 토사유출 • 공사인부 투입 • 공사장비 가동 • 구조물 공사 • 폐기물 발생	• 토지이용 변화 • 대기오염물질 발생 • 인공구조물 설치 • 오수 발생 • 비점오염물질 발생 • 폐기물 발생 • 소음 발생 • 인구 증가

나. 평가항목의 설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4.01.0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17-215호”를 비교·검토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3.1-2> 평가항목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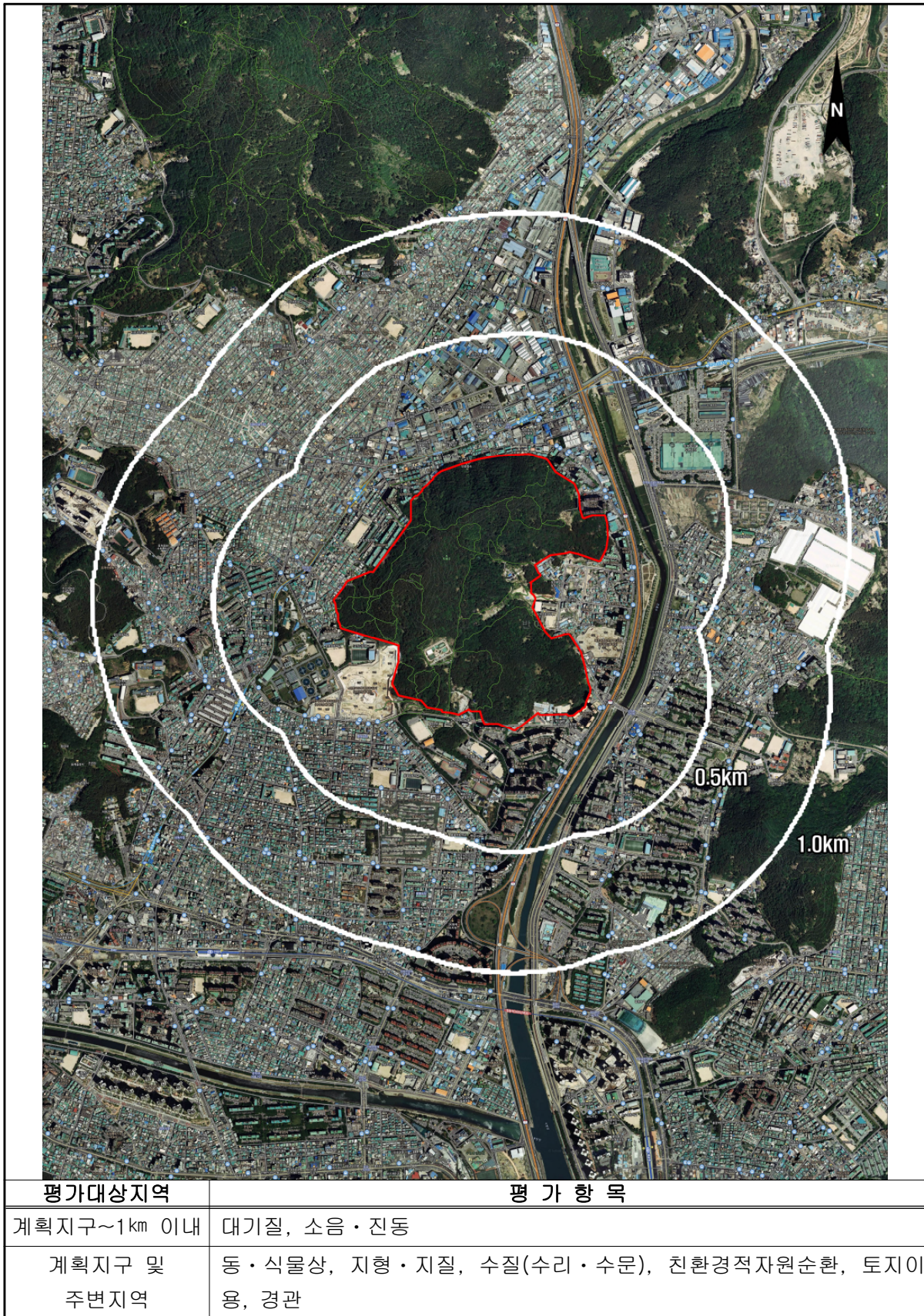
구 분			선 정 사 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 · 식물상	• 식물상의 훼손 및 동물 등의 서식지 이동 • 토사유출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 지질	• 부지정지 및 건축물 설치 등으로 인한 지형형상의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공동주택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수리 · 수문)	• 홍수량 변화 및 토사유출량 발생 • 공사시 및 운영시 오수 발생 • 운영시 초기우수(First flush)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배출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환경기준과의 부합성	대 기 질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난방, 취사 등 연료사용 및 차량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소음 · 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소음 · 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 · 진동 발생 • 운영시 입주자의 차량에 의한 교통소음 발생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 운영시 입주자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사회 ·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 수립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3.2 평가범위의 설정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 범위를 과학적인 근거하에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계획의 특성, 입지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표 3.2-1> 및 <그림 3.2-1>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3.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평가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시간적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식물 상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지질	•공사시 토공작업 등으로 인한 지 형·지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주변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계획지구 지형변화 및 공동주 택 입지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수리· 수문)	•공사시 토사유출량, 홍수유출량 및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유입이 예상되 는 계획지구 주변 수계 •운영시 입주자에 의한 오수 및 비점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 상되는 주변 수계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정성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대 기 질	•공사시 토사운반 및 장비가동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운영시 난방, 취사 및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주변으로 아파트 및 마을, 교육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계획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 터 1km 범위 이내의 정온시설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등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 되는 정온시설 지역 •운영시 입주자 차량에 의해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주변으로 아파트 및 마을, 교육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계획지구 및 지구 경계로부 터 1km 범위 이내의 정온시설	공사시 및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정성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폐유 및 건설폐재,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입주자에 의해 생활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계획지구	공사시 및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 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그림 3.2-1> 대상지역 설정도

3.3 평가 방법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환경영향을 다각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정리토록 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비교·검토한 후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할 계획임

<표 3.3-2> 평가방법

항 목			평 가 방 법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공사시 육상 동·식물상 및 육수생물상에 미치는 영향특성 분석 → 적정 보호대책 수립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토공사 및 공동주택 설치 등에 따른 지형특성 변화 검토 → 완경사의 환경친화적인 공법 계획 적용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변화여부 분석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수리·수문	•공사시 토사유출량, 홍수량 변화 및 오수발생량 산정·제시 → 토사유출 및 오수처리계획 수립 •운영시 입주자에 의한 오수발생량 산정·제시 → 오수처리계획 수립 •운영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발생 →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 수립
생활 환경의 안전 성	대기환경기준 과의 부합성	기 상	•문헌조사를 통한 기상자료 정리
		대기질	•모델링(AERMOD)을 통해 예측된 농도를 현황농도에 가중시켜 대기환경기준과 비교·검토 →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소음·진동기 준과의 부합성	소음·진동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예측식 및 유사사례 조사를 통한 예측결과와 환경목표기준의 비교·검토 →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
사회· 경제 환경의 조화 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원단위를 이용한 폐기물발생량 산정 → 적정 처리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 자연친화적인 토지이용 및 보상대책 수립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주체

-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청(공원운영과)

나. 평가항목·범위 확정 관련 추진경위

- 심의기간 : 2018. 12. 14 ~ 2018. 12. 28(15일간)

4.2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함

- 위원장 : 공원운영과장

- 위원 : 9명(공무원 3, 전문가 5, 시민단체 1)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원장(1)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과 장	여운철
위 원	공무원 (3)	협의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과 장	박상철
		관련부서	부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생태지질 팀장	김미향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 팀장	강혜란
	민간 전문가 (5)	자연생태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태호
		도시계획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형보
		생활환경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김화일
		일조경관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임주
		협의기관 추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공공인프라평가실	부연구 위원	주용준
	시민 단체 (1)	관련부서 추천	부산환경운동연합	간사	전구슬

4.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심의의견(박상철 위원) (1/3)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명장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328-1번지 일원인 명장공원 내 비공원 시설(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자연녹지→제3종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동 개발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 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 및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계획수립 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개요, 기본계획(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여부, 현황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포함) 등을 제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동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 돌출 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 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1 -

3. 대안

- 대안은 “NO ACTION” 포함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공원조성계획의 특성이 고려된 평가범위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유사사례를 분석·검토하고, 평가범위 설정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한 사업지역 내 법적보호종 출현 및 서식지 분포 여부 조사 · 제시하고 보전방안 등 저감방안 마련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근·중·원경의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 검토 · 제시
- 수환경의 보전
 - 사업시행에 따른 최종 유출수계가 수영강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 예측 후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 비공원시설 및 시설물이 설치되는 공원시설이 불투수면으로 전환되어 우수 유출량 증가로 하류도심지역의 우수관거 용량 부족, 도시 침수 등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영향예측 및 LID기법 등을 적용한 저감대책 제시
- 환경기준 부합성
 - 사업지역과 인접하여 주거지역, 학교 등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계획시행 전·후 대기질, 소음·진동 영향을 면밀히 분석 및 적정 저감방안 제시
 - 비공원시설에 대한 급수계획,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자료 제시
 - 동 사업은 온실가스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환경부 2015.12.09)」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심의의견(박상철 위원) (3/3)

- 생태면적률 적용대상 개발계획에 해당하므로, 현재 상태의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용도지역별 목표생태 면적률을 설정·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6. 기 타

-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추진중인 본 계획을 포함한 선행 추진경위 및 향후 시행 절차에 따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도시공원의 부지 및 비공원시설 면적과 현재 명장공원 내 기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끝.

2018. 12.

심의위원 박 상 철(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 업 명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	소속 및 성명	환경정책과 생태지질팀장 김미향(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부 훼손지가 있는기는 하나 대부분 생태자연도 1.2등급, 국토환경성평가등급 1등급, 부산시 도시생태현황동 비오톱서식지평가도 1등급, 비오톱보전가치평가도 2등급, 산림청 임상도 3.4영급지로 곰솔군락 등 침엽수림 등이 식생하는 자연생태가 우수한 곳으로 보전이 우선되어야 할 지역임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최대한 고유의 지형, 수계, 식생 등을 원형보존 하도록 하고, 자연환경 훼손된 공간은 식재 등 복원하도록 하여야 함. ○ 시설 설치 최소화하며,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인공적인 시설물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시설물 설치가 필요함. ○ 공사 및 운영시 야생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 도시염섭 완화, 비점오염원 관리,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 공사시 주변 주거, 교육 등 정온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약식평가 신청에 관한 사항 : 비대상		
☐ 기타사항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적극 추진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임		
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 업 명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	소속 및 성명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장 강혜란 (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사업대상지구는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생태자연도 1~2등급, 국토환경성평가등급 1등급, 부산시 비오톱서식지평가도 및 비오톱보전가치평가도 2등급 지역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곳으로 최대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식생, 지형 등 최대한 원형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진행시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라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과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임 ○ 계획지구 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2개소 위치하고 있어 수질(수리·수문)에서 지하수에 대한 영향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계획지구 주변으로 아파트, 마을 및 교육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공사소음 및 사업 완료 후 교통소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생활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아울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므로 현재 수림과의 조화가 충분히 고려되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운동시설, 공동주택 설치 등으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약식평가 신청에 관한 사항 ○ 약식평가 비대상이며, 사업 진행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최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은 만큼 정상적인 절차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기타사항 ○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여 할 것임		
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사 업 명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	소속 및 성명	부산대학교 이태호 01 (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사업지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민간공원 시설 및 공동주택 조성 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지역에 해당되며 대상 지역의 선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급경사면의 시설공사는 집중 강우시 강우유출수의 갑작스런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침수 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성되는 공동주택사업에는 충분한 양의 우수저장 및 활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지구의 인근에는 교육시설이 많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따른 학업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교통안전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강화할 것을 권함.		
☐ 약식평가 신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민간공원 및 공동주택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심의의견(김형보 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 업 명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	소속 및 성명	동의대학교 김형보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시에는 공동주택 설치 등에 의한 경관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자료도 제시해야 함 사업단위 구역내에서와 사업구역 외에서 볼 수 구분하여 주요로변경에서 자료제시함 것.		
☐ 약식평가 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경계부 약 100m 거리의 처리이동(동도, 층수 등), 처리이동 변화 등을 검토할 것.		
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28 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 업 명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	소속 및 성명	부산가톨릭대학교 김 화 일  (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비공원화 면적(81,000㎡, 10.32%)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업임.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대기(미세먼지 등) : 사업전의 대기질과 공사 중 및 운영시의 대기질 현황 비교, 대기질 저감방안 수립 필요함. - 소음진동 : 공사 중 및 운영시 정온시설지역의 사업 전·후 소음진동측정 비교, 이를 소음지도(Noise Map)로 작성하기 바람.			
☐ 약식평가 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 업 명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	소속 및 성명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최임주  (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현재 대단히 협소한 관계로 (특히 대상지 2곳 중 남측에 위치한 지역)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한 기존도로의 확장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반영할 것.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대상지역에 공동주택(아파트단지)이 들어설 것임에 따라 향후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항목을 세분하여 반영할 것. 즉, 사전에 일조와 조망을 고려한 검토 항목을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반영할 것.			
☐ 약식평가 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28 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명장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 총괄의견

- 사업지구는 도심에 섬 형태의 유일한 공원으로 그 자체로서 보전가치가 있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이 중앙에 떠 형태로 존재하는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임. 따라서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구상안

- 비공원시설은 식생보전Ⅲ등급지 지역을 최대한 회피하여 입지하도록 하고, 공원시설은 생태자연도 1등급 내에는 입지를 제한하여야 함. 또한 비공원시설이 2 곳으로 배치되면서 단지와의 연결을 위해 공원을 단절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1등급을 훼손하는 등 환경 훼손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한 영향이 사전에 예방될 경우에 한하여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음

3. 대안

- 대안은 공원기능의 유지를 위한 수단·방법의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안,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안 등 다수의 대안을 마련하여 평가하여야 함
- 비공원시설에 대한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배타적인 안을 마련하요 비교·평가하여야 함
- 수요·공급에 관해서도 주변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원시설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주변의 택지개발과 미분양, 도시기본계획 상의 생활권 목표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평가하여야 함
-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은 주변의 공사 중인 택지개발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4. 평가항목 및 방법, 범위

- 상위계획의 연관성 :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당 생활권에 대한 공원녹지 목표치와 당해 개발로 인한 공원녹지의 변화를 비율과 1인당 녹지면적을 조사하여 제시(개발전

■ 심의의견(주용준 위원) (2/2)

과 후를 비교)

- 계획의 적정성 : 공원면적에 대한 비공원시설의 비중과 개발밀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공원시설에 대한 기여도 등을 제시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주변 공동주택의 허용 용적률과 높이, 공원의 표고와 비공원시설의 지반고와 높이 등 조망의 차단과 스카이라인 훼손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 친환경적 토지이용 : 생활권의 계획인구 지표와 주변 택지개발의 목표인구, 주택보급률, 미분양 등 주택 수요 분석을 위한 자료

3.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의견없음

4. 기타

- 의견없음

2018. 12.21

심의위원 주용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 업 명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위원	소속 및 성명	부산환경운동연합 전구슬 (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해보임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자연녹지지역내의 용도변경이므로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세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공사 시, 산림 훼손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탄소중립사업이 되기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 본 사업은 자연녹지 지역에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예정이므로, 해당지역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어 산림훼손 지역의 복원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변에 사업지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다수 선정하여 경관을 평가해야 합니다.

- 운영 시 이동연소에 의한 배출량을 산정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에너지 절약 방안을 마련하여야합니다.

- 해당 지역 불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물순환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 **약식평가 신청에 관한 사항**

- 자연녹지지역의 용도변경이므로 약식평가 대상이 아님.

☐ **기타사항**

- 고층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 자연녹지 훼손, 주변 주거지 및 정온시설에 미치는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주변경관 훼손 등의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고층의 아파트 건축을 지양해야합니다.

- 무분별한 공원시설(주민편의시설) 계획은 산림을 훼손하므로 공원시설 계획을 줄이고 자연녹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28 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후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를 통해 공개할 계획임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할 계획임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공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획 수립에 대한 주요내용과 함께 전국 또는 부산광역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부산광역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공람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규정에 따라 시행할 계획임
- 공람기간, 장소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시 함께 공고할 계획임

2)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설명회)를 생략할 계획임

3)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부산광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